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영상정보 처리 특례규정 도입에 대한 검토

김 현 경* · 김 선 아** · 김 수 영***

< 차례 >

I. 서론

II. 개인영상정보와 정보통신서비스

1. 개인영상정보의 개념 및 특성
2. 정보통신서비스에서 개인영상정보의 활용과 보호

III.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의 내용 및 한계

1.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2.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의 한계

IV.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영상정보 규율 쟁점과 입법방안

1. 개인영상정보 규율쟁점
2. 입법방안

V. 결 론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조교수, 법학박사.

**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박사수료.

< 국문요약 >

드론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발달은 신산업 영역을 창출하였고, 방법·치안·근태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원치 않는 개인영상정보 유·노출 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직접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실질적 통제력을 가지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영상정보를 매개만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본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개유형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영상정보의 확산가능성과 침해회복의 어려움, 개인영상정보의 유통을 통한 직·간접적인 영리취득 등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특칙의 마련이 필요하다. 즉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의 요건과 절차, 적절한 관리를 위한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영상정보를 매개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역할과 책무 그리고 개인영상정보 주체의 보호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정보주체의 ‘사생활권’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이용자가 당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개인영상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정부가 이러한 지침의 내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내용에 맞게 지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자율을 부여하므로 영업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개인영상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전파성, 신속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상정보주체의 원치 않는 개인영상정보의 유출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삭제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개인영상정보, 사생활 침해, 영업의 자유, 정보통신망법, 개인 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I. 서 론

‘얼굴’(혹은 ‘안면’)은 특정인을 가장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인 정보이다. 그러나 기존의 기술적 상황에서 얼굴은 ‘사진(혹은 초상화)’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출 및 유통의 통제가능성이 그리 문제될 일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기술환경에서 ‘얼굴’을 포함한 개인영상은 언제 어디서나 촬영되는 것이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어디에서든 쉽게 유통될 수 있다. CCTV, 드론(Drone), 웨어러블(Wearable)기기, 차량용 블랙박스와 같이 영상을 촬영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편화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누구나 손쉽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구입할 수 있고 타인의 개인영상정보로 귀결되는 영상을 시간과 장소 등에 구애됨이 없이 촬영,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편화는 드론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의 신산업 영역을 창출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창출하였으나, 개인영상정보주체에 대하여서는 자신이 촬영되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유출·노출 및 사생활 침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 단계별 기준 등을 규정하고 피해 구제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¹⁾ 그러나 직접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지 않고, 매개만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영상정보는 매개하는 수많은 데

1) 본 고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7-77호로 재입법 예고된 법안을 의미한다.

이더 중 일 유형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 인식·통제가 곤란하다. 이를 감안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은 직접 촬영을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통상의 ‘개인영상정보처리자’와 달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영상정보 제공을 매개(媒介)하는 경우에는 동 법률(안)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

정보통신서비스가 기존의 ‘활자·부호’ 중심에서 ‘동영상’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개인영상정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중요 영업자산임과 동시에 정보주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갈등유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보통신망법」상 특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환경에서의 ‘개인영상정보’가 의미하는 바와 그 개념적 특징을 살피고,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의 쟁점·한계를 검토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개인영상정보와 정보통신서비스

1. 개인영상정보의 개념 및 특성

가. 개인영상정보의 개념

개인영상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

2) 제24조(적용의 일부 제외)

④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영상정보 제공을 매개(媒介)하는 경우에는 제3장 및 제4장, 같은 법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자료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 또는 녹화·기록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혹은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촬영된 영상정보를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장치 등 영상정보처리기기³⁾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특히 최근 행정안전부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인의 식별 가능한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정안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살아있는 개인 또는 해당 개인과 관련된 사물을 촬영한 정보로서 초상이나 형태, 행동 등을 통하여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영상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육안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자료는 물론이고 직관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문화해 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기능에 따라 영상의 촬영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영상촬영기기’와 PC, USB, WiFi 등 녹화·분석·전송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 녹화·전송·분석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기타 영상처리기기’로 세분화했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그렇게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과 네트워크 카메라(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구분되었던 것을 구체적인 설치·운영 형태에 따라 특정 장소에 고정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나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이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고정형 기기”와 웨어러블 기기(스마트 안경·시계 등)와 같이 사람의 신체에 착용하거나 스마트폰,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과 같이 휴대할 수 있는 이동성 있는 물건에 부착하여 운영하는 경우와 차량 블랙박스, 이동형 주차단속 카메라, 드론 등 이동성 있는 물건에 부착하여 운영하는 “이동형 기기”로 다시 분류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기타 영상처리기기’는 영상촬영기기와 전자회로 또는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촬영된 영상을 녹화, 전송 또는 분석하는 기기를 포함하지만, 영상촬영기기와 연결된 기기로 제한되므로 녹화된 영상을 별도로 복사하여 다른 기기에서 저장·분석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이나 물건이 나온 영상자료, 얼굴이 나타나지 않거나⁴⁾ 알아보기 힘든 경우 등 직·간접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착용하고 있는 의상이나 물건 등에 비추어 해당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영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물건에 대한 영상자료에 대해서도 결합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특정 개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물건이 사진이나 동영상 속에 나타나 있고, 그 물건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면, 해당 물건과 관련성 있는 개인이 영상정보주체⁵⁾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 자체는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그 사진은 개인영상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등 상당히 폭넓게 개인영상정보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합용이성, 식별성 등은 ‘개인정보’의 매우 특징적인 요소인데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은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⁶⁾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정의하고 있다. 예

-
- 4) 행정안전부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의 범위에 대하여, 성명이나 연락처 등 ‘문자’를 촬영한 영상자료는 ‘살아있는 개인’ 또는 ‘해당 개인과 관련한 사물’에 대한 촬영은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건물’을 촬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특정 유명인의 소유로 알려진 건물을 촬영한 사진과 같이 해당 사물의 소유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영상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 덧붙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범위가 상당히 폭넓게 설정되어 있음을 밝혔다.(개인영상정보 보호법안 제·개정이유서 참조)
 - 5) 행정안전부는 영상정보주체를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⁶⁾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정보주체라고 정의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정의내리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인위치정보주체(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신용정보주체(처리된 신용정보로 식별되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의 정의규정과도 마찬가지로 형태이지만, 종전의 각 법률상의 정보주체는 나타나 있는 개인과 관련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것이었으나, 영상정보주체는 영상자료에 나타난 개인이 아닌 ‘물건’이 특정인의 소유라고 하여 해당 물건의 소유자를 개인영상정보주체라고 하고 있어 위치정보법에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이동성 있는 물건의 소유자’를 개인위치정보주체로 보지 않는 것과 차이가 있다.
 -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정의 되어 있다.

를 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나. 개인영상정보의 특성

우선 개인영상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생산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운전면허 등은 한번 생성되면 특별한 이유로 변경되지 않는 한 그 상태로 처리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영상정보는 CCTV·네트워크 카메라 또는 차량용 블랙박스, 드론,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끊임없이 생성된다. 과거 고정된 장소에 설치되는 것이었던 영상정보처리기가 휴대성을 갖추고 IT와 융합하여 지능화를 이루어 내면서 개인영상정보의 확장성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언어에 대한 자동분석·변환, 법조·의료 등 전문성 보유, 카메라와 오디오의 영상·음성 분석·변환, 이론증명, 두뇌역할을 하는 신경망(네트워크) 등 다섯 가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⁷⁾ 인공지능(AI)⁸⁾ 기기에 장착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인간의 눈처럼 보면서 동시에 분석 자료의 하나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생산해 낸다.

다음으로 개인영상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수집 등 그 처리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인식가능성이 낮다. 본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또는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어왔다.⁹⁾ 특히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범죄 행위

7)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과학의 다른 분야와 직간접으로 많은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현대에는 정보기술의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적 요소를 도입하여 그 분야의 문제 풀이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 (두산백과)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8) 1956년에 광학판독 정도를 인공지능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은 사회적 환경변화 또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정도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다.(특허청, “인공지능(AI) 분야 산업재산권 이슈 발굴 및 연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연구(2016), 14면)

9)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참조.

의 입증이나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도 그 설치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2014년에 이미 CCTV 795만여 대, 블랙박스 643만여 대가 설치·운영되기에 이르렀다.¹⁰⁾ 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의 지능화가 진행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IT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산업군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가 되었고, 결국 개인이 일일 평균 83번씩 CCTV에 노출되는 결과¹¹⁾로 이어졌다. 심지어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를 통해 분별없이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하여서는 그 숫자를 가늠할 수조차 없어 그저 길을 걷고 있을 뿐인 행인은 자신이 촬영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개인영상정보 오남용과 유출, 노출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된 셈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개인영상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광범위하다. 개인정보는 대부분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라는 개인정보로 특정인이 식별되기 위해서는 전화번호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름’ 등 여타 정보와의 결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얼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자료 자체가 누군가를 바로 식별하므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고 개인영상정보만으로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의 얼굴·신체부위는 물론 레저활동·업무활동 등과 같은 개인일상생활의 전체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그 처리과정에서 개인의 사적으로 내밀한 영역까지 침해가 가능하다. 즉 개인영상정보는 특정인의 외모, 신체적 특징, 옷차림, 행태 등을 즉각적으로 나타내므로 사생활과 더욱 밀접하며 사생활 침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개인영상정보는 생체정보¹²⁾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주로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의료서비스 등 생체정보의 주체를 위한 목적으로 생성·추출·가공 되는 생체정보와는 구별된다. 또한 정보주체의 인식가능성이 낮으므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정보주체가 촬영사실

10)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정보화 통계집”(2016), 185, 187면.

11) 파이낸셜뉴스, “시민 1명 하루평균 83차례 CCTV노출”, 2016.12.15.

(<http://www.fnnews.com/news/201612151712269087>, 2018년 3월 21일 최종접속)

12) 제3장에서 생체정보의 개념에 대한 검토한 내용에 비추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성에 관한 사항들이 특별한 기술적 처리를 통해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게 된 정보의 총체인 것으로 생체정보를 정의할 수 있으며, 지문, 홍채, 망막, 정맥패턴, 얼굴, 음성, 서명패턴 등 사람의 고유한 신체적·생리적 특징과 같이 개인을 직접 나타내는 정보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을 인지하여도 대응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개인이 드론에 의해 사생활 침해
를 당했을 때, 해당 기기가 시야에서 벗어나면 이를 추적하기 힘들다. 시야에
있다 하더라도, 항공기 식별번호가 아예 없거나, 너무 작아 식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¹³⁾ 또한, 공익목적으로 촬영된 경우도 의도치 않은 민간사찰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사생활 침해의 피해가 클 수 있
으며, 악용의 소지도 다분하다.¹⁴⁾

2. 정보통신서비스에서 개인영상정보의 활용과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환경은 앞서 언급한 개인영상정보의 프라이버시 취약성을
더욱 확장시킨다. 정보통신서비스 환경에서 개인영상정보는 크게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가 직접 수집·이용하는 경우와 일반인이 수집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공개를 매개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서
비스 환경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등 노출 위험도가 높으며, 각종 스
마트기기와의 연계성에 의하여 피해가 빠르게 확산된다. 특히 이동형 영상정
보처리기기는 이동성·휴대성·융합성·은밀성·연계성·침단성 등의 특징을
기반으로 정보통신 서비스와 결합하여 개인영상정보가 침해될 위험성을 더욱
증대시킨다. 특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지능화와 보편화가 이루어지면서 개인
영상정보주체의 더 은밀한 영역까지 정밀하게 촬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침
해의 위험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소형화 되어가
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하여 정보주체들은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
는 서비스의 효용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개인영상정보는 치안 등을 위한
종래의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등에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헬스케어, 드론,
웨어러블 기기, 개인비서 등 ICT 융합 산업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
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면서 지능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가

13) 김현경, “기술혁신환경에서 프라이버시와 공권력의 충돌과 조화”, 『嘉泉法學』, 제9권, 제3호(2016.9), 114면.

14) 김송주, “무인항공기 관련 개인정보 보호 입법과제”, 『이슈와 논점』, 제1074호(2015.10), 2면.

능해지는 수준에 이르렀다. 가령 국내의 사례를 예로 들자면,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학교폭력사건에 대하여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¹⁵⁾ 인공지능(AI)으로 촬영된 영상에 나타난 폭행 등의 특정 행동을 파악하면 경찰에 신고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드론은 방법 등 치안목적 또는 경찰·군사목적 등 공공분야의 특수 영역에서 이용되어 왔던 것이 최근에는 키덜트 제품에서부터 물류·배송, 중계방송·촬영 등 민간 영역에서 드론산업¹⁶⁾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산업군의 발달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시도들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청(The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서는 2006년에 차량의 주행 속도, 안전벨트 및 에어백 상태 등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블랙박스 의무 장착에 관한 규제안을 발표하고, 2012년에는 경차의 경우 2014년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¹⁷⁾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미국 상원에서 블랙박스를 통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가 회수되는 경우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는 운전자 프라이버시법(The S1925-Driver Privacy Act)이 제안되기도 했다. 또한 2017년에는 캘리포니아 주 차량국(DMV)에서 공로(公路)에서 무인자동차의 시험주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하여(2017.3.10)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¹⁸⁾를 마치고 현재 시행 중(2017. 10. 11.)이다. 미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은 드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형무인기 규정안 제안

15) 중앙Sunday, “인공지능으로 동영상 분석해 학교폭력·자살 등 예방”, 2017.10.15(<http://news.joins.com/article/22012277>, 2018년 3월 22일 최종 접속)

16) 드론은 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다. 카메라, 센서, 통신시스템 등이 탑재돼 있으며 25g부터 1200kg까지 무게와 크기도 다양하다. 드론은 군사용도로 처음 생겨났지만 최근엔 공공 촬영과 배달 등으로 확대됐다. 이뿐 아니다. 값싼 키덜트 제품으로 재탄생돼 개인도 부담 없이 드론을 구매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농약을 살포하거나, 공기질을 측정하는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용어로 보는 IT) 드론 - 군사용에서 키덜트 제품까지)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대책”, (사)개인정보보호협회 위탁연구』(2015.10), 158면.

18) 차량을 통해 촬영되는 영상에서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사가 차량 소유자 등에게 문서로써 동의를 받아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니면 안전운행을 위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모두 익명화 하도록 의무화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김경환, 캘리포니아 공중운행 주법안, Information Privacy(제228.24조), 방송통신위원회 자율주행차 제도개선 연구반 제2차 회의 발표자료).

공고(Small UAS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2015.2월)하여 무게·운영시간·비행고도·속도 등의 제한 및 조종사의 자격, 항공기 규격 및 모델 등 일정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 허가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무인항공기의 통합관리, 면허관련 비행 테스트 도입, 비행구역 확대 등의 내용으로 법안이 추가 발의되기도 했다.¹⁹⁾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신체 부착 카메라 프로그램 추천과 교환이라는 보고서(2014년 발간)에서 경찰의 법집행에 필요한 촬영 시 공정성 담보 원칙을 제안하였는데, 착용형 카메라의 허용 근거와 기준, 사용 조건 등을 명확히 하는 등 경찰의 웨어러블 기기 사용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²⁰⁾

유럽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2018년부터 모든 승용차와 소형 VAN에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운행 정보·습관, 사고 일시·장소·규모, 에어백 상태 등의 정보가 인근 응급센터와 보험회사 등에 전송되는 블랙박스를 장착해야 한다(의회 통과, 2015. 4월).²¹⁾ 또한 민간영역의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하여 유럽연합은 비전 2020 프로젝트를 2014년 9월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유럽항공안전기구(EASA)는 드론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2015. 3월)하여 소형 무인기에서부터 대형 항공기까지 포괄할 수 있게 하였고, 동시에 사고발생과 같은 위험상황이나, 촬영·농업·택배 등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였다.²²⁾

19) Commercial UAS Modernization Act 법안은 뉴저지 민주당 의원 코리 부커와 노스타코타 공화당 의원 존 호벤에 의하여 발의되었으며, 2015년 2월의 드론 허용기준을 보완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대책”, (사)개인정보보호협회 위탁연구(2015.10), 163면.)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대책”, (사)개인정보보호협회 위탁연구(2015.10), 167면에서 재인용.

21) EU 집행위원회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블랙박스 의무화에 대한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을 발표하였는데, 다른 정보와의 결합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라고 할 수 없고, 해당 영상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차주이며, 해당 영상에 대한 접근은 원칙적으로 OBD에 접근할 수 있는 자이며, 해당 영상정보 활용 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EU 개인정보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차량용 블랙박스의 비용과 혜택에 관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대책”, (사)개인정보보호협회 위탁연구(2015.10), 159면에서 재인용)

22) 장정수, “미국과 유럽 드론 산업정책과 규제정책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다”, 『과워리뷰』

결국 이러한 산업군의 발달을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라는 이유로 전면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며 정보통신서비스 혹은 관련 산업의 수요를 충족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영국 정보보호위원회(ICO)는 2014년 감시카메라와 개인정보 사용 관련 정보보호 규정을 제정하여 드론에 의한 영상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원칙을 준수하게 했으며, CCTV Code of Practice를 발표하여 사전에 사용의 적절성·타당성·정당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²³⁾ 프랑스는 25Kg 미만 상업용 드론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개인 사유지 비행 금지와 여가목적으로 드론 운행 중에 타인을 촬영할 수는 있어도 타인의 영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제한하는 규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2014년에 드론법을 제정하여 장난감과 모형비행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²⁴⁾ 캐나다는 비디오 감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디오감시시스템을 제3의 독립기구에 의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지속적인 활용 여부에 대한 필요성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호주는 CCTV 운용지침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였다.²⁵⁾

Ⅲ.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의 내용 및 한계

1. 주요내용

가.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범위 명확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비영리단

(2015년 5월호), 25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대책”, (사)개인정보보호협회 위탁연구(2015.10), 164면에서 재인용.
 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대책”, (사)개인정보보호협회 위탁연구(2015.10), 168~169면.
 24) 강정수, “미국과 유럽 드론 산업정책과 규제정책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다”, 『과워리뷰』 (2015년 5월호), 25~26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대책”, (사)개인정보보호협회 위탁연구(2015.10), 166면에서 재인용.
 25) 한국정보보호진흥원,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해설서”(2007.11), 35, 49면.

체 등을 수범자로 하고 영상정보처리기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등을 촬영하는 기기를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로,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사람 등을 촬영하는 기기를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로 각각 분류하고, 기능에 따라 영상촬영기기와 기타 영상처리기로 구분하는 등 대상을 명확화 했다(안 제2조).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영상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다.²⁶⁾ 뿐만 아니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에 대한 안내판 설치 의무와 같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에도 불빛, 소리 등의 방법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영상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도록 명문화 하였다.

나.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 처리절차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목적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그 설치 목적 범위에서 불가피한 경우로서 영상정보주체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 목적 및 이용 방법의 제한, 폐기 기한의 설정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안 제11조~제14조).

다. 개인영상정보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영상정보처리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매년 개인영상정보의 처

26)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장소 또는 회의, 공연, 행사 등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은 장소에서 촬영하는 경우로서 촬영 사실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영상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리 현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안 제15조~제19조).

라. 영상정보주체 등의 권리 보장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출처 확인, 사본의 교부, 보관, 촬영 및 이용·제공의 중단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행사 방법 등을 규정하는 등 영상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한 실현을 보장하였다.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을 하는 경우 열람 등을 요구한 자 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안 제20조~제23조).

마. 기 타

개인영상정보가 침해되는 경우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행정안전부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권리 구제의 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8조), 행정안전부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동 법률안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영상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침해 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31조~제32조).

2.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의 한계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일반 개인이 수집하는 개인영상정보는 대면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통해서 제3자에게 제공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확산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²⁷⁾ 이에 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직접 처리하거나 매개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영상정보가 널리 전파될 위험이 매우 높

고 영리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 또한 높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산가능성과 침해회복의 어려움, 개인영상정보의 유통을 통한 직간접적인 영리취득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개인영상정보 수집·이용과 달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특칙을 마련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의 요건과 절차, 적절한 관리를 위한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부적절한 개인영상정보 처리로 인한 피해의 사전적 예방과 신속한 차단 그리고 실효적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의 특성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직접처리 유형이다. 예컨대 구글의 스트리트뷰 또는 카카오의 로드뷰 등을 통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제공되는 매개유형이다. 예컨대 보배드림의 블랙박스영상 또는 유튜브의 개인영상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개인영상정보이다. 예컨대 아프리카TV 등의 인터넷개인방송의 콘텐츠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그 유형에 따라 동일한 규제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례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 제19조와 제20조는 영상정보주체등²⁷⁾이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출처 확인, 사본의 발급, 보관, 처리의 전부·일부 정지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이러한 요구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영상정보를 직접 촬영하거나 수집하지 아니하고, 오직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촬영하거나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매개만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27) 일반인이 수집하는 개인영상정보가 넓은 전파성을 보이는 경우는 대부분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경우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28) 영상정보주체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자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열람 등을 요청하는 영상정보처리주체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게재한 이용자와의 이해관계의 고려 없이 무조건 열람 등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영상정보주체와 정당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이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개자로서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특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영상정보처리가 매개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 제16조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 관리도 이행이 어렵다. 동조는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촬영, 이용, 제공, 공개, 열람, 삭제, 폐기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영상정보를 직접 촬영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촬영이력 자체를 알 수 없다.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칙의 필요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따른 일반적인 규율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 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아니하고 정보의 매개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직접적으로 수집·이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실질적 통제력 가지는 개인영상정보 처리자를 규율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의 규정들은 그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은 매개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조문을 마련하고 있다. 동 법안 제23조 제5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같은 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또는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영상정보를 매개(媒介)하는 경우에는 제3장부터 제5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개인영상정

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영상정보주체 등의 권리 보장”에 관한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개유형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적절한 규율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영상정보를 매개하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책무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매개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주체의 보호방안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IV.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영상정보 규율 개선방안

1. 개인영상정보 규율쟁점

가. 프라이버시와 ‘영업의 자유’간 갈등

개인들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자발적으로 개인 정보들을 제공하기에 표면적으로는 어떠한 강제성도 띄지 않으면서 기업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영업의 주요한 자산으로 이용하게 된다. 특히 각종 SNS는 단순히 성별, 이름,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확장되어 개인의 기호, 취향, 행적 등 사생활 자체를 영업자산으로 하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더 이상 단순히 고객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적극적 마케팅을 위해 끊임없이 재가공 되어 새로운 가치를 지니는 정보로 변화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정보는 고유의 본질적인 주관적 가치를 넘어 기업에게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중요한 영업재산을 구성하게 된다. 시장경제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을 그리고 개인 간 계약체결을 가능하게 하고 그 준수를 보장하며 빠르면서도 확실한 재화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법질서를 필요로 한다. 기업이 소비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당해 기업이 헌법상 보장받고 있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영업의 자유는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의 한 내용이다. 이 직업의 자유는 자신이 종사할 직업을 결정할 자유(직업선택의 자유)와 결정한 직업을 자유로이 수행할 자유(직업수행의 자유)를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는데, 영업의 자유는 이러한 직업수행 자유의 중요 부분이다. 직업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개성신장의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을 통해 자유주의적 경제·사회질서의 요소가 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²⁹⁾ 기업이나 개인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당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수집·처리하여 이를 상품 또는 서비스화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³⁰⁾

다만 ‘정당하게’ 수집 처리한다는 것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기업의 ‘영업의 자유’가 갈등하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정당화의 한계를 ‘정보주체’ 즉 프라이버시권을 가지는 주체의 ‘동의’에 기반하여 규율하고 있다. 특히 무차별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동의의 방법, 사전동의 원칙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제15조), 특별히 프라이버시 침해적 요소가 강한 정보들(병력, 범죄 등의 민감정보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동의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및 제24조). 그러나 최근 무의식·무차별적으로 촬영되는 ‘개인영상정보’ 등은 이러한 규율만으로 양자의 갈등관계를 조화시키기에는 미흡하므로 (전술하였듯이) 별도의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영업의 자유’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를 둘러싼 ‘프라이버시권’의 갈등은 ‘공익’적 요소와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사익’ 간의 갈등 충돌이며 사인 간의 거래가 중심이 되는 한 사법적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는 부분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CCTV,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종 개인영상정보서비스는 각종 편리함

29) 헌법재판소 1989. 11. 20. 선고 89헌가102

30)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 “직업의 자유는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포함하고, 이러한 영업 및 기업의 자유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을 제공하나 개인영상정보에 기반 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수반하게 된다. 즉 이러한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법익의 갈등을 야기한다. 하지만 프라이버시만을 이유로 법규범이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의 개발을 저해하거나, 무력화 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는 국경 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프라이버시와 영업의 자유 간 갈등관계는 결국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 즉 법익 간의 충돌에 기인한다. 우리 판례는 법익 간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례의 원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법익 간 갈등이 첨예화 되었을 때 소송과정에서 적용됨으로서 이미 침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후에 적용하게 된다. 사전에 갈등되는 법익 간의 조화와 이익형량의 문제는 결국 입법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수렴, 입법자의 ‘자의(恣意)’에 맡겨질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입법과정에서도 비례의 원칙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³¹⁾

나. 사익 간의 충돌의 해결

영업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 추구하고자 하는 사익 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익 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우선 사익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원칙으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중세 신분적 구속에서 벗어난 근대시민사회에서의 사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³²⁾ 사적자치란 고전적 의미로 “개인의 자기 의사에 따른 법률관계의 형성의 원칙”을 의미한다.³³⁾ 이러한 의미를 전제로 볼 때 사적인 영역에서 사익 간의 법률관

31) 김현경, “기술혁신환경에서 프라이버시와 공권력의 충돌과 조화”, 『嘉泉法學』 제9권 제3호 (2016.9), 88~91면.

32) 종래 “우리 민법은 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하며, 공공복리라는 최고의 존재원리의 실천원리 내지 행동원리로서 신의성실·권리남용의 금지·사회질서·거래안전의 여러 기본원칙이 있고 다시 그 밑에 이른바 삼대원칙이 존재하고” 하는 입장이었으나(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9, 64면), 최근 민법의 개념은 사적자치에서 구하는 견해가 유력하다(양창수, 민법입문, 2000, 354면; 지원림, 민법강의, 2002, 18면 이하 등).

33) 의사를 강조하는 견해는 ‘개인이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스스로 형성하는 원칙’이라고 정의한다(Werner Flume,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Bd. 2, Springer-Verlag, 1992, S. 1). 이에 대하여 법질서를 강조하는 견해는 ‘법질서가 의사표

계에 대하여는 법질서가 개입을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사적자치의 원칙은 계약자유에 의해 실천된다. 개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기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주로 법률행위, 특히 계약을 통해서이다. 계약자유는 사적관계의 영역에 있어서 각자는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타인과의 사이에 계약을 맺음으로써 그 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이처럼 사적인 법률관계에서 사인들의 합의에 기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국가의 고권적·후견적 간섭을 원칙적으로 포기하고 그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원칙이다.³⁴⁾

그러나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한 고전적 의미의 계약자유 사상은 근대사상이 낳은 법적이념이기는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폐해를 드러내게 되었다. 형식적 평등에 기초한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이 합리성을 가지며,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 있어서 외적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둔 나머지 계약당사자 간의 실질적 불평등으로 인한 의사형성의 부자유의 문제를 간과하였다. 이 점에서 형식적 계약자유는 그 출발선상에서 이미 사회적·경제적 강자에 의한 남용의 가능성을 내포하였고 이러한 점이 근본적 결함으로 표출되게 되었다.³⁵⁾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를 보유하여 각자가 자유롭게 계약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충분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일방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면서 쌍방의 자기결정 대신에 그 자의 일방적인 결정이 행하여지는 상당수의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우월한 당사자의 계약자유는 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되어야 하며 이것이 계약의 내적 한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³⁶⁾

따라서 사인 간의 ‘프라이버시’와 ‘영업의 자유’ 등 사익 간의 충돌은 대등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힘의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이 아니라, 기본권 충돌의 해결방식으로 ‘이익(법익) 형량이론’과 ‘규범조화적 해결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³⁷⁾ ‘이익

시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거나 저지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원칙’이라고 한다(Franz Bydlinksi, *Privatautonomie und objektive Grundlagen des verpflichtenden Rechtsgeschäfts*, Springer-Verlag, 1967, S. 127ff.).

34) 지원립, “계약정의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9권 제2호(통권17호), 102면.

35) 장재현, “계약자유에 대한 제한의 이론적 근거”, 『법학논고』, 제6집(1990), 158면

36) 송덕수, “私의自治에 관하여”, 『사회과학논집』(1991), 50면.

(법익)형량이론³⁸⁾에 의하면 우위에 있는 기본권만을 보호하고 열위에 있는 어느 하나의 기본권은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규범조화적 해결원칙’은 위와 같은 ‘이익(법익)형량원칙’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제시된 이론이다.³⁹⁾ ‘규범조화적 해결이론’에 의하면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 중 일부를 양자택일하여 어느 하나의 기본권은 보호하고 다른 기본권은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헌법의 통일성의 원리에 따라 충돌하는 모든 기본권들을 가능한 모두 보호하는 조화점을 찾아 최적화하여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기본권의 충돌이 있을 경우 ① 충돌하는 기본권들에 비례적으로 제한을 가하여 모든 기본권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비례적 제한의 원칙 또는 법익형량의 원칙), ② 모든 기본권들을 양립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대안을 모색하고(대안모색의 원칙), ③ 대안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후퇴시키되, 이때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과잉금지의 원칙).⁴⁰⁾

-
- 37) 김현경, “기술혁신환경에서 프라이버시와 공권력의 충돌과 조화”, 『嘉泉法學』, 제9권 제3호(2016.9.), 102~103면. ‘기본권의 충돌(상충)’(Grundrechtskollision)이라 함은 상이한 기본권주체가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로 인하여 서로 충돌하는 각자의 기본권을 주장·행사하기 위해 국가에 대하여 각기 자기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흡연권과 금연권 또는 건강권(헌재 2004.8.26. 2003헌마457),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헌재 1991.7.22. 89헌가106)와 보도된 당사자의 명예의 보호 또는 반론권(헌재 1991.9.16. 89헌마165),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대판 1988.10.11. 85다카29) 등의 경우들처럼 개별적인 경우에 두 개 또는 다수의 기본권들이 서로의 이해를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형성의 자유이론’(입법자 역할론), ‘기본권의 서열이론’(기본권등급론), ‘이익(법익)형량이론’, ‘규범조화적 해결이론’(실제적조화의 이론, 형평성중시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 38) 가령 母가 종교적 교리에 의하여 子에 대한 수혈을 거부한 결과 子가 사망한 경우 子의 생명권은 母의 종교의 자유보다 우선한다.
- 39) 이 이론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과거범죄경력을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가 상충한 경우 기본권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원칙이다. Lebach 사건은(BVerfGE 35, 202ff.(1973)) 방송사가 과거 범죄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방영하려고 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제1단계에서 방송의 자유와 인격권 중 어느 한 쪽의 헌법가치도 추상적인 차원에서 우위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구체적 형량의 제2단계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시사보도에 대하여 보도의 자유의 우위를 주장한 뒤에 마지막 제3단계에서 ① 텔레비전 방송의 반복성, ② 시사적 정보이익의 부족, ③ 중대한 범죄, ④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해하는 경우에만 보도가 금지된다고 결정하였다. 오동석(2005), “법원의 검열, 영화 ‘그때 그 사람들’ 가처분 결정”(2005.1.31선고 2005카합 106), 『사법감시』, 제24호, 16~19면 참조.
- 40) 지성우, “개인정보보호와 소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관계에 관한 연

다. 규범설정방향

우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촬영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의해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영상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개인영상정보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며 매개서비스만 제공하는 한 촬영된 사실 혹은 개인영상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 조차 인식하기 힘들다. 직접 촬영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유통과 관련하여 ‘사전동의’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서비스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영업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영업의 자유’와 개인영상정보주체의 ‘사생활권’ 모두 보호하는 조화점을 찾아 최적화하는 규율마련이 필요하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이용자가 당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영상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삭제조치 등이 규범조화적 해결방안으로 제안될 수 있다. 이하에서 구체적 입법방안을 제안한다.

2. 입법방안

가. 이용자 개인영상정보 처리지침 마련 및 준수

이용자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플랫폼을 통해 공개 또는 유포하는 사업자는 이용자에 의해 처리되는 모든 개인영상정보를 개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는 없으나 해당 정보의 매개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이므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이용자가 영상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고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이용자로 하여금 준수해야 하는 일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전에 개인영상정보 침해 위험에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입법정책좌담회 발표자료(2012.12), 16~17면.

처리하는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담은 이용자개인영상정보처리지침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용자개인영상정보처리지침에 수록될 내용은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대한 것으로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이용자 영상정보처리지침에 담길 내용으로는 ① 개인영상정보주체의 권리보장방법, ② 개인영상정보주체에 대한 이용자의 의무,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용자 준수사항, ④ 개인영상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절차 등과 ⑤ 그밖에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가독성과 사업자의 지침마련의 불편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영상정보처리지침을 만들기 보다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영상정보처리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이용자 영상정보처리지침”을 마련할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방안 이외에 “이용자 영상정보처리지침”을 마련해 둔 자에 한하여 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개인영상정보처리지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를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수립의무)과 수립 및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수립·공개 의무), 수립 또는 수립·공개를 선택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임의규정), 수립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권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수립·권고의무) 등 대안적 구성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정부가 이러한 지침의 내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내용에 맞게 지침을 작성할 자율을 부여하므로 영업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개인영상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서 기본권 충돌시 해결방안으로 제안한 ‘규범조화적 해결방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나. 개인영상정보의 삭제요청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전파성, 신속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상정보주체의 원치 않는 개인영상정보의 유출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사진, 동영상 등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원치 않는 공개를 당한 경우에 반론과 토론을 통한 자정작용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빠른 전파 가능성으로 사후적 손해배상이나 형사적 제재만으로는 피해자의 손상된 인격이나 사생활 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사례를 배제할 수 없는데, 반박내용 게재 또는 링크·스크랩·검색노출 기능 차단 등의 조치만으로는 사실상 개인영상정보주체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므로 개인영상정보 공개의 차단 또는 비식별화 등의 영상정보주체 보호 장치가 요구된다.

개인영상정보의 원치 않는 처리로부터 개인영상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방식은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⁴¹⁾의 삭제·임시조치 등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제44조의2 개정을 통하여 영상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자가 그 사실을 소명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삭제 또는 영상정보주체

41)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계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비식별화)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제44조의2 제1항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처리정지, 영상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경우에는 즉시 그 개인영상정보 처리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요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며, 그 개인영상정보를 공개 또는 유통한 이용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와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일차적으로 영상정보제공자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삭제 또는 처리정지, 영상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의 기회를 주되, 원활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영상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개인영상정보의 삭제 또는 처리정지, 영상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소명의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개인영상정보 게재 사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소명방식은 지극히 단순하여야 한다. 그리고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요청 사실을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공개한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한다.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개인영상정보의 삭제, 처리정지 또는 영상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⁴²⁾ 다만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정보통신서비

42) 한편, 영상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주장자의 개인정

스 제공자가 개인영상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 한다면 과도한 업무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서비스사업자에게 집행되기 곤란하므로 국내·외 사업자간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삭제할 것인지, 처리정지 조치를 할 것인지, 또는 영상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것인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일련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와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영상정보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었다면 공개 자체가 침해에 해당되므로 굳이 별도의 임시조치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음으로 반박내용의 게재는 영상정보주체의 침해구제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또한 해당 영상정보를 삭제하는 외에 영상정보주체의 보호와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균형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 기 타

최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한 유형으로 이른바 홈캠 내지 가정용 CCTV (Home Security Camera)의 활용이 늘고 있다. 이들 홈캠은 소비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개인이 필요설비를 구매·설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처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홈캠과 관련하여 최근 침해사고가 증가하면서⁴³⁾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대응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홈캠

보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43) 아시아경제, “가정용 캠 해킹사고 끊이질 않아…3년간 신고만 700건”, 2017.9.2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no=2017092210015761460>, 2017년 12월 17일 최종 접속); KBS 뉴스, ““집 안을 훑히” 가정용 CCTV 해킹 비상”, 2017.5.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73553&ref=A>, 2017년 12월 17일 최종 접속)

에 의해서 촬영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주체와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기준으로 세분하여 제도적 처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홈캠은 비록 가정용 실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그 법적 개념은 대부분은 디지털 방식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IP 카메라이다. 즉,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⁴⁴⁾로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서 예상하고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홈캠을 통해서 촬영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주체는 해당 홈캠이 설치된 주거공간의 거주자와 방문자로 구분할 수 있고, 거주자는 다시 해당 홈캠을 구매·설치하여 운용하거나 홈캠서비스의 이용계약자와 그 동거인(가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직접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거나 홈캠 서비스를 신청한 본인이므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따른 권리침해 또는 충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거인(가족 등) 또는 방문자의 경우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이 적용된다. 즉,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홈캠을 운용함으로써 스스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용자가 가정 내에 위치한 홈캠 장비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일부 조작행위에 기여하더라도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상정보 처리행위에 종된 행위로 볼 것이다.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개된 장소(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⁴⁵⁾가 아닌 곳에 홈캠을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려면 원칙적으로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안 제5조 제3항). 주거지 내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여 운용되는 홈캠으로 촬영되는 개인영상정보는 주거지 내에 설치를 신청 또는 동의한 자와 그 동거

4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 참조.

45) ①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시설, 공공장소, 도로 등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장소와 ② 집합건물의 복도 또는 계단, 주차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로서 특정집단의 구성원이나 이와 관련된 방문객이 출입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 제5조 제2항).

인은 물론 일시방문자의 것도 포함할 수 있는데, 일시방문자에게 개인영상정보 촬영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개인이 본인의 주거공간에서 스스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라면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의 개인영상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 외의 장소”에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이 사유지에 사적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안 제 5조 제3항). 즉, 개인은 주거지 내에 홈캠을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고, 해당 개인은 홈캠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더라도 이는 업무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개인과의 계약에 따라 정보통신회선 또는 저장공간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홈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이므로 홈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조치방안 또는 이용자에 대한 가이드 등 세부적 규율방안을 지침 등 하위법규를 통하여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홈캠을 설치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 동거인 또는 일시방문자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공법적 규율대상보다는 해당 개인과 동거인 및 방문자 간에 민사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이다.

V. 결 론

‘개인영상정보’는 다양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발달로 그 침해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많은 분야에서 드론·웨어러블 기기·차량용블랙박스

등 ‘이동형 영상처리기기’의 이용이 점차 확산되면서 국가기관을 비롯 사인에 의해 개인영상정보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촬영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헌법이 개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사생활 비밀과 자유·행복추구권·인격권·개인정보자기정보결정권 등과 같은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 개인영상보호법체제는 CCTV 등과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수많은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증대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저장·유출·오남용 등의 침해위험성에 대비한 법제도적 대응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최근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특별법 형태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이에 대한 법률적 취급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의 자유’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개입하는 방식에 따라서 신중하게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통해 유통하는 매개유형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의 적용대상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서 개인영상정보를 유통하는 경우에 그 개인영상정보는 널리 전파될 위험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의 보완을 통해 이를 예방하고 피해의 확대를 차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의 개정방안으로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이용자로 하여금 준수해야 하는 일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전에 개인영상정보 침해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용자가 촬영한 개인영상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통해 매개되는 경우 그

개인영상정보를 개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는 없으나, 해당 정보의 매개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의 자유’가 조화롭게 해석, 적용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통신서비스의 전파성, 신속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상정보주체의 원치 않는 개인영상정보의 유출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의 게재를 원치 아니할 경우 게재를 지속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삭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9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김민호, 행정법, 박영사, 2018.
박용상, 언론의 자유, 박영사, 201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4.
양창수, 민법입문, 박영사, 2000.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9.

<연구논문>

- 장정수, “미국과 유럽 드론 산업정책과 규제정책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다”, 『파워리뷰』 (2015년 5월호)
고형석, “개인정보침해와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저스티스』, 통권 제145호 (2014.12)
곽영임, “개인정보유출사건판결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학회지』, 제15권 제2호(2014)
권영빈, “생체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조사·연구”, 정보통신부(2004)
권영준, “해킹(hacking)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판단기준”, 『저스티스』, 통권 제132호(2012.10)
김경환, 캘리포니아 공중운행 주법안, Information Privacy(제228.24조), 방송통신위원회 자율주행차 제도개선 연구반 제2차 회의 발표자료
김민호,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6권 제4호 (2014.12)
김수영·김현경, “디지털헬스케어환경에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규제의 합리적 조화방안 연구”, 『IT와 법연구』, 제12집(2016.2)
김송주, “무인항공기 관련 개인정보 보호 입법과제”, 『이슈와 논점』, 제1074

호, 국회 입법조사처(2015.10)

김선이,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법적 고찰”. 『동아법학』, 제65호 (2014)

김일환, “정보사회에서 생체정보의 보호에 관한 헌법적 연구”, 『인권과 정의』, 통권 제344호(2005.4)

, “미국의 생체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인터넷법률』, 제31호 (2005.9)

, “생체정보보호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33집 (2006.11)

김현경, “‘개인정보’와 ‘사물정보’의 규제 차별성에 관한 연구 - 사물인터넷 환경 하에서 서비스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第27卷 第3號 (2015.9)

,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본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재검토”, 『성균관법학』, 제26권 제4호(2014.12)

, “기술혁신환경에서 프라이버시와 공권력의 충돌과 조화”, 『嘉泉法學』, 제9권 제3호(2016.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대책”, (사)개인정보보호협회 위탁연구』(2015)

박영철, “생체정보의 보호”, 『헌법학연구』, 제10권 제4호(2004.12)

성준호,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 제21권 제2호(2013)

송덕수, “私的自治에 관하여”, 『사회과학논집』(1991)

안창원, 황승구. “빅데이터 기술과 주요이슈”, 『정보과학회지』, 30권6호, 한국정보과학회(2012.6)

연광석, “생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국회사무처(2005)

이민영, “생체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제도적 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 제16권 제21호(2004)

이부하, “환자의 의료정보권”, 『한양법학』 제17집(2005)

- 이상명, “의료정보화와 의료정보보호”, 『법학논총』 제25집 제1호, 한양대 법학연구소(2008)
- 이준형, “생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논의상황”, 『통상법률』, 제50호, 법무부(2003.4)
- 장재현, “계약자유에 대한 제한의 이론적 근거”, 『법학논고』, 제6집, 1990
- 지성우, “개인정보보호와 소위 ‘잊혀질 권리’ (Right to be forgotten)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입법정책좌담회 발표자료(2012.12)
- 지원림, “계약정의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9권 제2호(통권17호)
- 최경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성균관법학』, 제25권 제2호(2013) 외, “사물지능통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 『방송통신정책연구』, 2010.
- 최민석·하원규·김수민, “만물지능인터넷 관점으로 본 초연결사회의 상황 진단 및 시나리오”, 『IT 이슈 리포트』, 2013-12호(2013.7)
- 특허청, “인공지능(AI)분야 산업재산권 이슈 발굴 및 연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연구(2016)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해설서”(2007)
- 황창근,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법제연구』, 제46호(2014.6)
- Kenneth P. Nugar, “Biometric Applications: Legal and Societal Considerations,”
<http://www.engr.sjsu.edu/biometrics/publications_consideration.html>.
-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Privacy & Biometrics Building a Conceptual Foundation, 2006.9.15.
- Werner Flume,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Bd. 2, Springer-Verlag, 1992

【Abstract】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pecial regulation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i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Kim, Hyunkyung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Kim, Suna

Visiting Professor of Soongsil University

Kim, Sooyo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development of image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s such as CCTV, drones and wearable devices has created a new industry area and provides convenient and useful services in various areas such as security and attendance management. However, concerns about serious privacy violation are also raised due to the unauthorized disclosure or leakage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In order to alleviate these concerns, the government is trying to legislate the "Personal Image Information Protection Act". However, the bill is aimed at disciplining personal image information processors that have substantial control over the processing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such as by taking personal image information directly. Therefore, this measure is difficult to apply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who only mediate personal image information. Thus, this bill

does not apply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s providers that only mediate personal image information. However,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spreading personal image information, difficulty in restoration of infringement, and direct or indirect commercial acquisition through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pecial rules on personal image information processing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to be obeyed whe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mediates the personal image information, and the protection methods of the subject. However, in establishing such a system, it should be ensured that there is no excessive restriction on the 'freedom of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and a plan should be prepared so that it can be harmonized with the 'privacy' of the subject. The proposed scheme is as follows. Firs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should provide certain guidelines to prevent the user who processes personal image information from infringing the right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subject when using the service. This is a way to protect the privacy of the personal image information subject without being subject to a significant violation of the freedom of business because the government gives autonomy to write the guidelines according to the service contents. Next, considering the propagation and spee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a quick remedy for the leakage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is need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should take certain measures such as deletion when the information subject requests deletion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Key Words : personal image information, privacy, freedom of business,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Bill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protectio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provider.

- ° 투고일 : 2018. 2. 23.
- ° 심사일 : 2018. 3. 19.
- ° 게재확정일 : 2018. 3. 26.